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92 제출연월일: 2024. 7. 24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,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 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 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,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 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,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·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"3년"을 "4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안전 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"를 "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조사·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 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9조의2(인증 유효기간) ① 제9 제9조의2(인증 유효기간) ① ----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 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---- <u>4년</u>-----날부터 3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 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 -----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 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9조의3 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 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・ 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----삭제>